

INSUNG 인성회계법인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고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더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 측에서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대법원 2012도 911]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세금의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세 등 공제 감면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14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일일이 검토하여 최적의 공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장전문 회계사/세무사

- 여직원이 인당 50개~100개의 거래처 관리
과도한 업무부담
- 주된 업무도 원천세, 부가가치세 및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대행
- 경정청구에 대한 세법지식 전문성 부족

경정청구 전문 인성회계법인

- 경정청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회계사와
세무사가 직접 업무처리
- 매년 200개 이상의 사업자 경정청구
- 147개 조항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최대한의 경정청구 금액 산출

인성회계법인 문의

성명

연락처

경정 청구를 위한 설문지

업체명

담당자

날짜 2021년 월 일

연락처

NO	항목	세부내역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회사 재무담당자 성명	
4	회사 재무담당자 전화번호(휴대번호)	
5	세금계산서 받을 이메일	
6	2019년 납부 산출세액 혹은 결정세액	원
7	2020년 납부 산출세액 혹은 결정세액	원
8	연구소 보유여부	유 / 무
9	기계장치 등 투자여부(토지/건물/차량 제외)	유 / 무
9-2	대략적인 투자금액	
10-1	2018년 종업원수	
10-2	2019년 종업원수	
10-3	2020년 종업원수	
11	동업종 최초 창업여부	여 / 부
12	법인 지점의 수(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의 수)	
13	합병/분할/법인전환 내역	유 / 무
14	수정신고/경정청구/세무조사 유무	유 / 무

작성자

(서명)